

### 주목할 만한 내용:

#### 1. 조세관리 (Tax Administration)

- 조세관리법에 대한 시행규칙 초안;
- 조세관리에 위험관리 적용에 대한 시행규칙 초안

#### 02. 법인소득세 (CIT)

- 고객에게 선물로 준 보험 비용에 대한; 유의 사항
- 세무총국의 CIT 정산에 대한 상담

#### 03. 부가가치세 (V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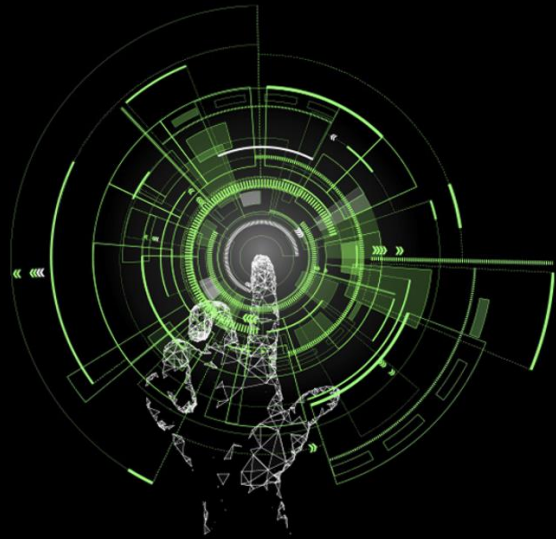
- 2021년 본사 소재지와 다른 지방에 소재하는 부속 지점은 VAT 직접 신고함;
- 글씨가 희미한 인보이스에 대한 처리

#### 05. 외국인 계약자세 (FCWT)

- 해외 외주 위탁업체의 원자재 처분으로 인한 소득;
- 국제 물류 및 포워딩 서비스에 의한 소득;
- 베트남에서 외주가공계약의 양도는 FCWT가 부과됨;
-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서비스에 의한 소득;
-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비스에 대한 FCWT

#### 06. 무역.관세 (Trade & Custom)

- 수출입세에 대한 법령 수행에 관한 제134/2016/ND-CP호 시행령을 보완하는 제18/2021/ND-CP호 시행령;
- 수출 신고서상 상품 원산지 기술;
- 아웃소싱 활동을 포함하는 수출용 완제품 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 부품에 대한 세금 처리;
- 한국 원산지 원단에 대한 EU-베트남자유무역협정 (EVFTA)의 원산지 누적기준 적용 시점;
- EVFTA협정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 ("P/O")에 대한 지침



## 조세관리



### 시행규칙 초안

#### 조세관리법에 대한 시행규칙 초안

현재, 재무부는 제38/2019/QH13 호 조세관리법 및 2020년 10월 19일 제126/2020/ND-CP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시행규칙 초안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부처 및 업체들로부터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본 시행규칙 초안은 전자 상거래 사업 및 디지털 사업 등에 대한 세금신고; 세금계산; 세금배분; 세금, 연체이자 및 벌금 처리, 세금 면제 및 감면, 세무조사등 조세관리에 대한 여러 규정을 보완하며 세무 준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무부는 본 시행규칙이 아직 발행 혹은 발효되지 않은 기간동안 제38/2019/QH13호 조세관리법 및 제 126/2020/ND-CP호 시행령상 자세히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할 법적서류가 발행될 때까지 제156/2013/TT-BTC호 시행규칙, 제92/2015/TT-BTC호 시행규칙, 제130/2016/TT-BTC호 시행규칙, 제26/2015/TT-BTC호 시행규칙등 현행 시행규칙에 의한 안내사항을 적용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행했다.

*(재무부의 2021년 02월26일 제1938/BTC-TCT호 OL).*

본 시행규칙 초안의 주목할 만한 내용은 딜로이트의 2020년 3월 17일 [세무뉴스](#)를 참고하십시오

*(재무부의 2021년 02월 25일 제1914/BTC-TCT 호 OL, 2021년 02월 26일 제1938/BTC-TCT OL)*

#### 조세관리에 위험관리 적용에 대한 시행규칙 초안

재무부는 최근에 조세관리에 위험관리 적용에 대한 시행규칙 초안과 관련하여 유관 기관, 부처, 단체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OL을 발표하였다.

본 시행규칙 초안은 세금 등록 및 신고, 세금 부채 및 조세 행정제재, 세금 환급, 세무 조사/감사, 인보이스 관리등 세무상 업무에 위험관리 적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시행규칙 초안은 기업과 개인의 대상으로 납세자의 세무준수, 위험수준을 분류에 대한 기준을 공개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이를 바탕으로 세무준수 상태를 자체 평가하여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본 초안은 적절한 조세관리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은행상 거래에 의심스러운 징조가 있거나 업체의 대표이사가 조세 위반죄로 고소되거나 조세의 key topics에 대한 위험이 높은 납세자의 경우등 세무감독에 몇가지의 핵심사례를 규정한다.

*(재무부의 2021년 03월 12일에 제2543/BTC-TCT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가능

## 법인소득세 (CIT)



### 주목할 만한 내용

#### 고객에게 선물로 준 보험 비용에 대한 유의 사항

회사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객에게 '생명보험 패키지'를 선물로 주는 경우 (회사의 직원이 아님, 해당 프로그램이 산업통상부에 등록됨) 보험계약 당사자가 고객의 이름으로 되며 보험사가 고객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면 해당 보험 비용은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다.

보험 패키지를 선물로 받는 고객의 경우 해당 소득은 현행규정에 따라 PIT 과세소득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PIT가 면제된다.

(세무총국의 2021년 01월 14일 제153/TCT-CS호 OL)

### 세무총국의 CIT 정산에 대한 상담

2021년 03월 11일, 세무총국이 당국의 사이트에서 2020년 과세연도 CIT확정신고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운영 임시 중단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기업이 2020년 과세연도에 일부의 고정자산의 운영을 09개월 미만으로 임시 중단한 후에 영업활동을 위해 이러한 고정자산의 운영을 재개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는 CIT목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 Covid-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지원 기부 비용

재무부는 Covid-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지원 기부 비용과 관련하여 기업의 손금산입으로 처리를 위한 안내사항 및 해당 필요한 증빙서류를 안내하는 시행령을 정부에 제안했다.

#### Covid-19기간동안 전문가에 대한 격리 비용

근로계약상 기업의 숙박비 지급의무를 명확히 기술된 경우 격리비용과 관련 적절하고 충분한 증빙서류, 인보이스가 있으면 해당 격리비용은 CIT 목적으로 공제될 수 있다.

#### 외국인 전문가가 격리기간을 완료한후 노동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지급된 급여비용

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만 노동법규정에 따라 노동허가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에 지급된 급여비용은 CIT 목적으로 공제될 수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지급 비용에 해당 매입 VAT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 전년의 비용은 다음해에 관련 증빙서류를 받은 경우

전년의 인보이스 및 증빙서류가 발생연도의 손금산입 조건을 충족하면 업체는 CIT법 및 조세관리법 규정에 따라 해당 발생연도의 CIT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 전년으로 부터 이월된 이자비용에 대한 신고

특수관계 거래가 발생한 기업에 관한 조세관리에 대한 제132/2020/ND-CP 호 시행령, 제16.3c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전기의 공제되지 않은 이자비용을 다음 연도(05년 초과하지 않음)의 이자비용에 이월할 경우 제132/2020/ND-CP 호 시행령의 부록01, 섹션 IV 및 [B11] 항목 - 제03/TNDN호 양식상 세전이익을 감소시키는 기타 조정사항으로 신고한다.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가능

## 주목할 만한 내용

### 2021년 본사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중속적인 지점은 VAT 직접 신고함

제126/2020/NĐ-CP호 시행령, 제11.2조에 의한 신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직접 판매하는 지점 포함 모든 중속적인 지점의 VAT는 본사를 통해 VAT를 집중적으로 신고된다.

다만, 제126/2020/NĐ-CP호 시행령의 경과규정에 대한 제43조 및 제122/2020/QH14호 시행령의 국가예산 안정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제1.5조에 의하면 중속적인 지점이 지방세무국에 VAT 신고를 계속하고, 제126/2020/NĐ-CP호, 제9.2조에 따라 역년에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26/2020/NĐ-CP호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본사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중속적인 지점이 2022년부터 현지세무국에 직접 VAT 신고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본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VAT를 신고해야 할 것이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3월 1일  
제6146/CTHN-TTHT 호 OL)*

### 글씨가 희미한 인보이스에 대한 처리

고객에게 주는 인보이스 두번째 사본은 보관과정에서 파손되거나 글씨가 희미한 경우 제39/2014/TT-BTC호 시행규칙, 제24조 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 사건에 대한 기록서를 작성해야 한다. 본 기록서상 첫 번째 송장 사본이 세금 신고된 날짜가 명시되어야 하며 양측의 대표이사에 의한 서명·날인 (있는 경우)을 받아야 한다. 그이후 판매자는 첫 번째 인보이스 사본을 복사하여 서명·날인한 다음 회계 서류 보관 및 세금 신고 목적으로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구매자 및 판매자는 파손된 인보이스 사본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3월 12일  
제7432/CTHN-TTHT 호 OL)*



## 부가가치세 (VAT)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가능







## 외국인 계약자세 (“FCWT”)



### 지침 문서

#### 해외 외주 위탁업체의 원자재 처분으로 인한 소득

베트남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에게 임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받았는데 그 원자재가 불량되므로 사용할 수 없음을 발견하여 모회사에 보고한 후에 베트남에서 불량 자재를 처리하고 폐기물을 처분할 권한을 모회사한테서 위임 받은 경우:

- 베트남에서 폐기물 처분대금이 모회사에 직접 결제되며 자회사는 지정한 대로만 배달하고 대금을 받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 처분대금이 자회사의 매출로 인식되지 않음;
- 폐기물을 구매하는 베트남 업체는 재무부의 2014년8월6일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의 지침에 따라 외국 모회사를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음.

(박닝 세무국의 2021 년 3 월 16 일 제356/CTBNI-TTHT호 OL)

#### 국제 물류 및 포워딩 서비스에 의한 소득

외국 회사가 해외에서 베트남 (도착지) 으로 국제 운송 및 물류 서비스로 인해 소득을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은 베트남에서 FCWT 부과대상이 아니다.

외국 회사가 베트남 (출발지) 에서 해외로 국제 운송 및 물류 서비스로 인해 소득을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은 베트남에서 FCWT가 아래와 같이 부과된다:

- CIT: 과세소득의 2 %;
- VAT: 0% (제219/2013/TT-BTC호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국제운송에 해당한 경우); 과세소득의 3% (VAT 0%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하노이 세무국의 2021 년 2 월 19 일 제5335 / CTHN-TTHT호 OL)

#### 베트남에서 외주가공계약의 양도는 FCWT가 부과됨

외국 회사(A)가 베트남 업체에 가공을 맡기기 위해 제공한 부품, 완제품 및 반제품을 다른 외국 회사 (B)에 이전/재판매를 위해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외국 회사 B가 외국 회사A 와 베트남 외주가공업체간의 수출품 외주가공계약을 양도 받은 경우 이는 베트남에서 자산 매각 또는 조립계약 이전에 의한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외국 회사 A가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FCWT부과대상이 될 것이다.

(세무총국의 2021 년 1 월 8 일 제71 / TCT-CS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가능



## 외국인 계약자세 ("FCWT")



### 지침 문서

####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서비스에 의한 소득

베트남 회사가 외국 계약자와 관리.운영과 관련 컨설팅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인 계약자가 제103/2014/TT-BTC호 시행 규칙 제1조 1항에 따라 FCWT부과대상이 된다.

- 계약대가에 세금이 포함된 경우 납부 VAT, CIT세액은 "과세소득"에 VAT 세율 5%, CIT 세율 5%를 곱한 값으로 계산된다.
- VAT 과세소득은 베트남 회사가 외국 계약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비용 (있는 경우) 및 납부해야할 세금을 포함하여 VAT과세 서비스 또는 상품에 부착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외국 계약자가 수령한 총 소득이다.
- CIT과세소득은 베트남 회사가 외국 계약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비용 (있는 경우) 및 납부해야할 세금을 포함하여 외국 계약자가 수령한 VAT 제외된 총 소득이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1월 28일 제3722 / CTHN-TTHT호 OL)

####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비스에 대한 FCWT

외국 기업이 베트남 기업에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소득을 발생하는 경우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에 따라 FCWT 과세대상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

- 상기 서비스가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분류된 경우 해당 소득은 VAT가 면제되고 10% CIT가 부과됨;
- 상기 서비스가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아닌 경우 해당 소득은 5% VAT 및 5% CIT가 부과됨;
- 또한 이메일 도메인 제공 서비스에 의한 소득은 VAT 5% 및 CIT 5%가 부과됨;
- 서비스가 소프트웨어 서비스인지 여부 분류는 제71/2007/ND-CP호 시행령에 의한 규정을 근거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1월 27일 제3454 / CT-TTHT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가능

## 무역.관세



### 신규 규정

#### 수출입세에 대한 법령 수행에 관한 제134/2016/ND-CP호 시행령을 보완하는 제18/2021/ND-CP호 시행령

2021년3월11일에 정부는 수출입세 실행에 대한 제134/2016/ND-CP호 시행령을 보완하는 제18/2021/ND-CP호 시행령 ("제18호 시행령")을 공표하였다. 제18호 시행령은 2021년4월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제134호 시행령에 대한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륙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규정추가 (제 3 조)
- 임가공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면세 기준 명확화 (제 10 조).
- 수출 생산용으로 수입되어 외주가공을 거치는 물품 및 특정 내륙 수출입에 대한 면세 규정 추가 (제12조)

- 투자 인센티브 적용대상 프로젝트의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면세 기준 추가 (제14호)
- 수출가공기업("EPE")에 대한 세관 조사, 감독 조건 및 조세 정책 적용에 관한 규정 추가(제 28a 조)
- 세관당국의 관리 및 마스터 리스트에 따른 수입세 면제 제품 확정신고에 관한 상세 규정 추가 (제31a조)
- 재수출해야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환급 조항 강화(제 34 조)

(정부의 2021년3월11일 제18/2021/ND-CP호 시행령의 자세한 업데이트 내용은 Deloitte Vietnam의 세무뉴스를 확인하십시오.)

### 수출 신고서상 상품 원산지 기술

자유 무역 협정에 의한 원산지를 안내하는 시행규칙에 따른 베트남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수출품의 경우 관세 신고자는 수출 신고서상 "상품 설명"기준에 베트남 원산지로 신고할 수 있다.

수출품은 베트남에서 임가공 및 조립의 일부 공정만 수행되므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관세 신고자는 수출 신고서상 베트남 원산지로 신고할 수 없다.

베트남이 아닌 외국 원산지 수출품의 경우 관세 신고자가 수출 신고서상 "상품 설명" 기준을 "상품 설명 #& (원산지국가코드)" 의 구성으로 신고한다.

(재무부의 2021년02월18일 제1523/BTC-TCHQ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가능



## Trade and Customs



### 지침 문서

#### 아웃소싱 활동을 포함하는 수출용 완제품 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 부품에 대한 세금 처리

수출용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2016년 09월 01일 이후 세관 신고된 수입 재화에 대해 생산공정의 일부를 다른 외주기업에 위탁하여 가공하고 완제품을 돌려받아 생산을 계속하거나 수출을 위한 완제품을 돌려받은 경우 수입세가 면제된다.

(관세총국의 2021년 2월 23일 제879/TCHQ-TXNK호 OL - 딜로이트 베트남의 자세한 업데이트 내용은 [이 링크](#)에 접속하십시오)

#### 한국 원산지 원단에 대한 EU-베트남자유무역협정 (EVFTA)의 원산지 누적기준 적용 시점

2021년 3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EU로 수출된 섬유제품은 제11/2020/TT-BCT호 시행규칙 제9조의 제7항에서 제11항까지에 의한 규정에 따라 한국 원산지 원단 재료에 대한 원산지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8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EU로 수출된 섬유제품은 제11/2020/TT-BCT호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소급적인 원산지증명서인 EUR.1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총국의 2021년 02월 26일 제101/XNK-XXHH호 OL - 딜로이트 베트남의 자세한 업데이트 내용은 [이 링크](#)에 접속하십시오)

#### EVFTA협정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 ("P/O")에 대한 지침

EVFTA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하여 관세총국은 아래와 같은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 EU는 REX코드가 등록된 이후만 원산지 자체 인증을 허용한다 (즉 자체인증 P/O는 REX코드 유효일 이후에 발급되어야 효력이 있다. REX코드 유효일 이전에 발급된 자체 인증 P/O는 효력이 없을 것이다.

(2020년 08월 21일 제5575/TCHQ-GSQL호 OL)

- P/O는 오류가 있으며 누락된 경우 신고자가 P/O를 수정 또는 대체 제출할 수 있다.

(제38/2018/TT-BTC호 시행규칙 제7조, 4항)

- 2020년 8월 1일부터 본 시행령의 발효일전까지 등록된 신고서의 경우 EVFTA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제111/2020/ND-CP호 시행령에 따라 P/O를 추가로 제출 가능하다.
- EVFTA의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자체 인증 P/O가 허용되지 않는다.
- 자체 인증 P/O상 발급 일자와 장소가 기술되지 않으면 관세당국은 포장 목록상 발급 날짜 및 장소의 기준으로 근거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02월 05일 제712/TCHQ-GSQL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가능





##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 Hanoi Office

15<sup>th</sup>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 Ho Chi Minh City Office

18<sup>th</sup>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